상주시 공고 제2026-1638호

202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·변경신청 공고

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에 따라 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일

상 주 시 장 

1. 지원목적

○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·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

○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

2. 신청기한 및 방법

○ **신청기한: 2026. 12. 4.(금)까지**

○ 신청방법: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3. 신청자격

○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

○ 26년도에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은 농업경영체의 경작필지는 27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지원기준의 50% 이내로 제한

○ 친환경인증농가, 친환경단지농가,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는 우선순위를 부여

○ 2027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.

4. 지원대상 비료

○ 유기질비료(3종): 혼합유박·혼합유기질·유기복합비료

○ 부숙유기질비료(2종): 가축분퇴비·퇴비

※ 유기질비료 참여업체 및 제품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
5. 지원

(단위 : 원/20kg)

구 분	특등급	1등급	2등급
유기질비료	1,600		
부숙유기질비료	1,600	1,500	1,300

※ 27년도 예산 확보 시 관내 생산업체 비료 추가 지원 가능

6. 지원한도

○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품목별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사용량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
※ 다만, 부숙유기질비료는 1,000㎡당 2,000kg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

7. 유의사항

○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후 신청

○ 유기질비료 전산시스템 일정에 따라 기간 경과 시 신청불가

8. 문의처

○ 농업정책과 담당자(☎054-537-7447)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